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7
----------	-----

제출일자 : 2006. 2. 9

제 출 자 : 사하구청장

1. 제안사유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자연재해 대책법」이 일부 개정, 시행(2005.1.27 법률 제7359호로 공포)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구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자연재해대책업무에 대한 대응관리 체계를 확립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목적(안 제1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나. 위원회의 기능(안 제2조)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위험요인 및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검토

다. 위원회의 구성(안 제3조)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필요시 추가 위촉

○ 위원장은 자연재해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 호선

○ 위원은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부서의 장과 재난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명·위촉

라. 위원의 임기(안 제4조)

○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위 재직기간,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 연임가능

○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마. 위원회 운영(안 제6조)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시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 소집

바. 검토의견서 제출(안 제7조)

위원은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

사. 현지조사(안 제8조)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 : 2005. 11. 10 ~ 11. 30(20일간) 별도의견없음

마. 기 타 : 표준조례안 시달(시 방재과-7894, 2005.10.6)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 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이하 “령” 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재난안전대책본부” 라 한다)의 자연재해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본부장이 지명하는 부서의 장과 재난방재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업무소관담당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등) ①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공적·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2. 위원이 특정인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그 직위를 이용한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4. 기타 본부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위원중 위원장, 부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시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약에 대한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위원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검토의견서 제출) 위원회의 위원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약에 대하여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별지 서식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현지조사) ①위원장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약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의견 반영)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공정검토의무) ①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협의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

②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1. 개최·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검토사항
4. 토의진행사항
5. 위원발언 내용
6.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계획(사업) 사전재해영향성검토의견서

1. 총괄의견

2. 세부검토의견

3. 기타의견

상기와 같이 ○○계획(사업)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검토자 : ○ ○ ○ 위원(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장 귀하